

<2024년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> 사업 추가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, 전시 콘텐츠 기획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<2024년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에 참여할 단체(기업)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I 공모 개요

- (공모명) 2024년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사업 (추가)공모
- (공모방향)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우수 전시콘텐츠의 지역 확산
- (공모기간) **공고일~2024년 5월 13일(월), 17:00까지**
- (공모내용) 지역 전시 개최 민간단체(기업) 공모 및 직접경비 지원
- (지원기간) 2024년 7월 1일(월) ~ 11월 30일(토)
- (지원규모) 총 3.5억원(+a*) * 접수기간 내 1차 공모선정자의 사업취소 발생 시(+a)

구분	신청지원금 (정액, 70~80%)	자부담금 설정 가능범위 (20~30%)
(A)유형	100,000,000원 (정액)	최소 25,000,000원(20%) ~ 최대 42,850,000원(30%)
(B)유형	150,000,000원 (정액)	최소 37,500,000원(20%) ~ 최대 64,280,000원(30%)
(C)유형	200,000,000원 (정액)	최소 50,000,000원(20%) ~ 최대 85,700,000원(30%)

- ※ 신청규모에 따라 유형별 지원금(정액) 및 자부담금(20~30%)을 설정하여 신청
- ※ 제시한 신청지원금 및 자부담금 규모에 맞지 않게 지원 시 심의에서 제외함

II 세부 내용

- (신청대상) 서울 외 지역의 전시공간(공·사립·문예회관·복합공간 등)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우수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(기업)

< 지원 자격 >

- 최근 3년 이내 전시* 개최 이력 최소 1건 이상 보유
-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or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민간단체(기업)

- ※ 단체(기업)의 소재지역은 무관
- ※ 전시 이력은 최근 3년(21~23년)이며, 전시 분야는 시각예술 전시로 한정함.

〈 지원 불가 〉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에 해당하는 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」 제7조(보조사업 선정 기준),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제1항 제1호 바~사목에 해당하는 기관
-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기관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기관
-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
- 지방자치단체 및 국비·지자체비로 운영하는 기관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
-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
- 복제(레플리카) 전시

○ (우대사항)

-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후원/협력(예산 공간 등) 시 심의 우대
- 충청도(충청북도/남도), 경상남도 권역에서 전시 개최 시 심의 우대

○ (필수사항)

- 서울 외 지역에 전시 기획운영 필수, 전시장소/기획*은 일부사항 외 제한 없음
- 전시 운영일*은 설치·철수 제외 주말 포함 45일 이상 필수
- 총괄기획자* 선임 필수
- 자부담금* 20~30% 편성 필수 +가산점

○ (권장사항)

- 전시 개최지역 기반 활동 작가·기획자 매개 프로그램* 운영 권장
- 유료* 전시 권장

〈 개념별 정의 및 신청서 작성전 필독사항 〉

• (우대사항)

- 지자체/기관/민간 등의 후원/협력 확정증빙을 제출한 경우, 충청도(충청북도/남도), 경상남도 권역에서 전시 개최할 경우 심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대

• (전시장소)

- 서울 외 지역을 기준하며, 전시장소는 국공·사립 미술관 및 보유*공간 등 모두 가능함.

※ 보유공간은 신청주체가 보유 혹은 임차 중인 공간을 뜻하며 전시 장소로 설정 가능하나, 사업비에서 대관료 편성은 불가능함.

• (전시기획)

- 전시 참여작가, 작품, 장르의 별도 제한 없으며, 기 운영된 전시도 참여 가능함.
- 단, 관례적인 회원(단체)전,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, 복제(레플리카) 전시 등 지원 불가

• (전시 운영기간)

- 전시개최 및 운영은 작품 등의 설치·철수 일정 제외 주말을 포함하여 45일 이상 필수
- ※ 전시공간의 자체휴관일도 운영일에서 제외하여야 함.

• (총괄기획자)

- 전시 기획·운영 등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신청주체의 대표자, 신청주체의 내부 소속인력, 외부 전문가 중 선임할 수 있음.
- 단, 신청주체의 내부 소속인력이 총괄기획자인 경우 사업비에서 기획인건비 지급 불가
- ※ **총괄기획자는 추후 면접심의에서 PT발표 필수**

• (자부담금)

- 신청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해야 함.
- 총사업비(100%)는 보조금(70~80%)+자부담금(20~30%)으로 구성해야 함.
- ※ 추후 심의에서 자부담금 20% 초과 시 1%당 0.5점씩 가산점 부여함.

• (지역 작가·기획자 매개 프로그램)

- 전시 개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·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말함.
- 프로그램의 형태는 제한 없음. (아티스트 토크·네트워킹·교육·강연 등 형태 무관)

• (입장료)

- 입장료는 무료/유료 선택 가능하며, 유료 전시를 권장함.
- 입장료로 인한 수익금 발생 시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함.
- 단, 수익금 활용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필수
- ※ 신청주체가 비영리(고유번호증 보유) 유형인 경우, 입장료 수입은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함.

○ (지원사항) **국고보조금 및 자부담금은 아래 지원항목 내에서만 편성**

〈 지원항목 〉		
목	세목	항목
인건비	기타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괄기획자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주체의 대표자, 외부 전문가 총사업비의 10% 이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장지킴이, 코디네이터 등 ※ 월60시간 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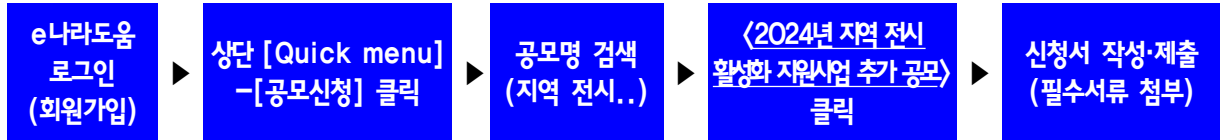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인력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용근로자, 단순보조 <p>※ 1개월 최대 6일 한도 (1일 8시간/월 60시간 미만)</p>
<p>※ 주의) 기타인건비의 모든 항목은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지급 불가하니 유의하며, 신청주체의 대표자가 총괄기획자인 경우에만 예외로 함.</p>		
운영비	일반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가비(Artist's Fee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 출품, 대여 등에 대한 사례비 <p>※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작가비 지급 불가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가활용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사, 학술행사의 발표·사회·토론자, 원고·편집자, 통·번역자 <p>※ 제시한 기준항목 외 전문가 활용 희망 시 사전협의 필요</p> <p>※ 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불가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홍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물 인쇄, 주요매체 광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모품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회용품, 재료 등 전시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
	공공요금 및 제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장, 작품 등에 대한 보험비
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관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장 및 부대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대관비 <p>※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전시공간 활용 시 대관료 편성 불가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차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에 필요한 물품/장비 등에 대한 임차비 <p>※ 신청주체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물품 활용 시 임차료 편성 불가</p>
	일반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행용역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, 촬영, 작품 등의 반입·반출, 설치·철수 등 <p>※ 제시한 기준항목 외 용역 활용 희망 시 사전협의 필요</p>
<p>※ 주의) 홍보비~대행용역비 항목은 (세금)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며, 인적용역 계약 불가</p>		

〈지원 불가항목〉	
선정단체/기업 경상비	•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
자본적 경비	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등
업무추진비	•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
전시 준비비	• 장소 답사, 준비 등을 위한 교통, 숙박, 유류대 등
기타	•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
<p>※ 주의) 신청주체가 보유한 인프라(보유 혹은 임차 중인 전시공간, 소속인력 등)에 대해 예산 편성은 절대 불가능하며, 유·무형 자산의 획득을 엄격히 금지함. (신청주체가 총괄기획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함)</p>	

III

신청 접수

- (접수기간) **공고일~2024년 5월 13일(월), 17:00까지**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


*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 (이용문의) 1670-9595

- (제출서류)

순번	제출서류 및 파일형식	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e나라도움 작성·제출
2	지원신청서 (양식)	e나라도움 첨부
	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(양식)	
	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(양식)	
	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(양식)	
	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양식)	
3	(해당자) 주요실적, 전시장소, 후원·협력 증빙 사본	
4	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	
(참고) 별도제출	PT 발표자료(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예정)	

- (e나라도움 첨부파일 등록방법) *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정리방식 준수하여 제출 필수



○ (신청 유의사항)

- 제출서류는 반환수정 불가능, 서류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지원 축소 혹은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내용 불이행 시 사업 제외 및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은 지양하여야 함
- 자부담은 최소 20~30% 내에서 필수 책정해야 하며, 선정 후 최종지원액(국고보조금)에 따라 설정한 자부담 비율에 맞춰 자부담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
-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지원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공급가액으로만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
- 사업비는 지원기간(7~11월) 내 설정한 사업기간에만 활용 가능, 사전 및 사후 활용은 불인정함
-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통장 해지를 금지함
- 지원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해야하며, 기간 내 휴·폐업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사업 운영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보조금법)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예술인 복지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
○ (참고) 참여단체(기업) 의무사항

- 서울 외 지역 전시 기획·개최·운영
 - 참여작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
 -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,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
 - 자부담금(보조금의 20~30%) 전액 소진 및 증빙·정산 필수
 -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신고 필수
 -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 필수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의무교육 수수료 및 서약서 제출
 -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등에 후원표기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 - 전시기간 중 관람객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 (최소 200명 이상 참여)
 - 시각예술시장조사*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설문 응답 필수
 -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- ※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변경, 정산, 실적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※ 사업비(보조금·자부담금)는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

IV

심의 및 발표

- (심의방법 및 일정) 5월 3주~5월 5주 *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(5월 3주) 행정심의	(5월 4주) 서류심의/발표(1.5배수 내외)	(5월 5주) 면접심의/최종발표
필수서류 등 결격확인	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심의	PT발표·인터뷰, 예산심의 ※ 발표는 총괄기획자가 수행 필수

* 결과는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및 선정주체 개별 연락

- (심의기준)

심의지표	비중	내용
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40%	-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- 사업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계획의 충실성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
신청주체의 전문성·활동실적	30%	-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 -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
사업계획의 기대도·파급효과	30%	-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- 사업의 주제, 작품·작가 등의 시의성
(가산점)	최대 +5%	- 자부담률 20% 초과 시 가산점 부여(1% 초과당 0.5점씩 가산)

V

문의처

- 사업 문의

- (이메일) arts@gokams.or.kr
- (전화) 02-2098-2927

※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(*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- e나라도움 이용 문의

- (전화) 1670-9595